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8 관련)

구분	수수료 요율	비고
임대 수탁	총임대료의 12퍼센트 이내	
사용대 수탁	위탁계약 건당 20만원 이내	
매도 수탁	매도금액의 1퍼센트 이내	감정평가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기 수수료, 법정수수료는 따로 계산 한다.